

## 교 직 지원 부 규 정

(제정 2010. 10. 26.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에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 교육을 전담하는 교직지원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교직지원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과정 설치 및 관리·운영
2. 교직이수 신청자 및 예정자 관리
3. 교생실습에 관한 사항
4. 교원 자격 무시험 검정 업무
5. 비사범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위호에 부수되는 교직 관련 업무

**제3조(교직지원부장)** ① 교직지원부장(이하 “부장”이라 한다)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부장은 교직지원부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.

**제4조(행정지원)** 교직지원부는 본교 사범대학 내에 두며,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**제5조(재정)** ① 교직지원부의 재정은 교비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 등으로 운영한다.

② 교직지원부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